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개정 2020. 12. 29.>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지 역	국 가
1.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네팔·투발루·솔로몬제도·예멘·동티모르
2.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세네갈·남수단
3. 아메리카	아이티

비고

1.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